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13
----------	-------

발의연월일 : 2017. 12. 5.

발의자 : 민홍철 · 박주민 · 정춘숙
이찬열 · 박덕흠 · 최인호
윤영일 · 홍문표 · 전재수
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훼손된 지역(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을 말하여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훼손지”라 한다)”을 “훼손되었거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훼손된 녹지공간을 복원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성이 시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

효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공공주택은 지구 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 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훼손된 녹지공간을 복원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성이 시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개

발제한구역 내 공원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